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
----------	-----

제출년월일 : 1999년 12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로 정원책정 및 승인조치됨에 따라 그에 상응한 정원을 새로이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정원책정에 따라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총정원 501명 ⇒ 505명(증 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492명 ⇒ 496명(증 4명)
  - 부칙 「표 1」
    - 정원의 총수 536명 ⇒ 540명(증 4명)
    - 집행기관의 정원 527명 ⇒ 531명(증 4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9명 ⇒ 9명
  - 부칙 「표 2」
    - 정원의 총수 526명 ⇒ 530명(증 4명)
    - 집행기관의 정원 517명 ⇒ 521명(증 4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9명 ⇒ 9명

나.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7월 31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조정

##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관계부처승인:자치 12200-90(99.09.13)호 및 자치 12200-261(99.10.7)호 지침 참조

라.입법예고 : 해당없음

마.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바.조례·규칙심의회 : 제21회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99.11.25)원안의결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총수 "501명"을 "505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492명"을 "496명"으로 한다.

부칙 제2조 표1중 정원의 총수란 "536명"을 "540명"으로, 1. 집행기관란 "527명"을 "531명"으로 하고, 표2중 정원의 총수란 "526명"을 "530명"으로, 1. 집행기관란 "517명"을 "521명"으로 한다.

부칙 제4조중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 "7월 31일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501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492명</u></p> <p>2. (생략)</p> <p>부 칙</p> <p>제2조(생략)</p> <p>[표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 원 의 총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u>536</u></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527</u></td> </tr> <tr> <td>2. 의회사무과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r> </tbody> </table> <p>[표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 원 의 총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u>526</u></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517</u></td> </tr> <tr> <td>2. 의회사무과의 정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r> </tbody> </table> <p>제4조(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u>7월 31일</u>까지 정한다.</p>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u>536</u>	1. 집행기관의 정원	<u>527</u>	2. 의회사무과의 정원	9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u>526</u>	1. 집행기관의 정원	<u>517</u>	2. 의회사무과의 정원	9	<p>제2조(정원의 총수) ----- ----- <u>505명</u>으로 ----- -----.</p> <p>1. ----- : <u>496명</u></p> <p>2.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2조(현행과 같음)</p> <p>[표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 원 의 총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u>540</u></td> </tr> <tr> <td>1. -----</td> <td style="text-align: center;"><u>531</u></td> </tr> <tr> <td>2. -----</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r> </tbody> </table> <p>[표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 원 의 총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u>530</u></td> </tr> <tr> <td>1. -----</td> <td style="text-align: center;"><u>521</u></td> </tr> <tr> <td>2. -----</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r> </tbody> </table> <p>제4조(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 ----- ----- <u>6월 30일</u> -----.</p>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u>540</u>	1. -----	<u>531</u>	2. -----	9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u>530</u>	1. -----	<u>521</u>	2. -----	9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u>536</u>																																
1. 집행기관의 정원	<u>527</u>																																
2. 의회사무과의 정원	9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u>526</u>																																
1. 집행기관의 정원	<u>517</u>																																
2. 의회사무과의 정원	9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u>540</u>																																
1. -----	<u>531</u>																																
2. -----	9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u>530</u>																																
1. -----	<u>521</u>																																
2. -----	9																																

공신년월 11896 공신일시 99.9.13  
 수취처 강원도의 관광자원 EXPO로 빛내보자  
 모사전송  
 수취번호 11896  
 수취인명 강원도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0361)255-0717. 행정2989/전송249-4027  
 자치행정과 과장 이명섭 지방행정사무관 박호석 담당자 이주의

문서번호 자치 12200- 90

시행일자 99. 9. 13 ( 1년)(공개)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선람	진주	강원	지시	
점	일자	1999. 9. 13	결재	부과장 이명섭
수	번호	215	공람	과장 박호석
처 리	과		심사	심사일
담 당	자	이명섭		
심 사	자			

제 목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 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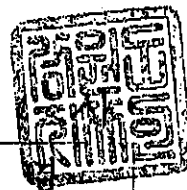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제16,550호,공포'99.9.9)의 공포·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된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이첩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2. 아울러, 현재까지 2단계 지방구조조정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의 지방의회결 및 직원인사를 포함한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하여 지방행정 조직이 조기에 안정을 되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 1부 끝.(전자우편으로 송부)

강 원 도 지

전결 자치행정국장 최 현



수신처 : 더(01-18)

## 2] 超過現員에 대한 經過措置 基準

< 개정내용 : 영 부칙 제2조·제3조 >

- ◇ 2단계 지방구조조정은 연차별 3개년에 걸쳐 감축 추진
  - 1999 / 2000 / 2001
- ◇ 연도별 감축에 따른 1년간 유예기간 부여하되 별정직은 기간단축 가능
  - 1999년(7~12월) 감축 → 2000. 12. 31(1년 6월)
  - 2000년 상반기 감축 → 2001. 7. 31(1년)
  - 2001년 상반기 감축 → 2002. 7. 31(1년)
- ◇ 2·3차년도(2000년, 2001년) 감축은 매년 6월 30일까지 직급별 정원 확정

### □ 改正理由

- 2단계 구조조정은 '98 1단계 지방구조조정과 달리 연차별로 감축하므로 정원조례에 감축인원에 대한 경과조치기준 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신설
- 연차별 감축에 따른 직급별 감축인력을 매년 상반기까지 확정하여 그에 따른 초과현원 결정

### □ 施行內容

- 연차별 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은 매년 상반기 확정
  - 연도별로 확정된 초과현원에 대하여 1년간 신분유예기간을 부여, 2000년도·2001년도에 감축한 초과현원은 다음해 7. 31까지 인정하되, '99년도 감축분은 2000. 12. 31까지 인정함

- 지방자치단체별 직급별 정원의 확정 방법
  - 정원관리기관별, 부서(과)별 감축대상 구체적 결정
  - 민간위탁 추진,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와 연계한 직급별 인력의 감축
  
- 직급별정원 감축과 관련한 사전협의(승인) 이행 및 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매년 5월말까지 협의 완료
    - 시·도 협의 → 행정자치부장관
    - 시·군·구 협의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협의결과를 매년 6월 10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종합보고
  - 행정자치부는 매년 6월 15일까지 시도의 시군구 협의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시정·보완결과를 종합반영 정원규칙 개정
  
- ※ 협의안 서식은 별도 통보 예정
  
- 2000년, 2001년의 직급별 감축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원규칙 개정
  - '99년 1차년도 지방구조조정안 확정시 시정보완요구된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은 2000년 개정협의안에 반영
  - 조례표준안('99. 6. 12시달)의 부칙규정 제3조 개정조치
    -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개정
  
- ※ 2·3차년도(2000/2001)의 직급별 정원조정 계획 사전수립 제출(별첨 1)
  - 제출기한 : '99. 12월말까지

모사전송  
 송신부  
 송신번호  
 수신번호  
 송신국  
 수신국

도

우-200-700/충청남도청/충청남도청/전화(0361)249-2224 /FAX 249-4027  
 자치행정과장 이명섭 조직관리담당 박호석 담당자 이주익

문서번호 자치 12200 -261

시행일자 1999.10.7.

(경유)

발음 수신처참조

참조

선발	군수	지시	
접수	일자	결재	부군수
수	시간	공	과
	번호	람	장
처리과			담
담당자	자치행정과		당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 시달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동지침에 의거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 1부. 끝.

강 원 도 지

전결 자치행정국장 최현



수신처 : 거(08, 14), 더(01~18)

##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계획 및 직급별 정원

구 분	읍·면·동별 배치현황			확대배치 계획					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			
	계 (개소)	배치 읍면동	미배치 읍면동	계 (명)	기존배치 전문요원			확대배치 전문요원	계 (명)	7급	8급	9급
					소계	7급	8급					
계	187	135	52	210	156	102	54	54	210	77	71	62
순천시	25	15	10	27	17	11	6	10	27	10	9	8
원주시	25	20	5	27	22	20	2	5	27	10	9	8
강릉시	21	18	3	24	20	10	10	4	24	9	8	7
동해시	10	10	0	14	14	9	5	0	14	5	5	4
태백시	8	8	0	9	9	5	4	0	9	3	3	3
속초시	8	8	0	13	13	11	2	0	13	5	4	4
삼척시	12	8	4	14	10	9	1	4	14	5	5	4
홍천군	10	8	2	11	8	5	3	3	11	4	4	3
횡성군	9	6	3	10	7	4	3	3	10	4	3	3
영월군	9	6	3	10	7	5	2	3	10	4	3	3
평창군	8	4	4	8	4	2	2	④	8	3	3	2
정선군	9	7	2	9	7	3	4	2	9	3	3	3
철원군	6	4	2	6	4	2	2	2	6	2	2	2
화천군	5	3	2	5	3	1	2	2	5	2	2	1
양구군	5	2	3	6	3	1	2	3	6	2	2	2
인제군	6	3	3	6	3	1	2	3	6	2	2	2
고성군	5	3	2	5	3	2	1	2	5	2	2	1
양양군	6	2	4	6	2	1	1	4	6	2	2	2

※ 사무소 미설치 6개 면 읍면동 수에서 제외